

『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총괄·조정 및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기구조정과 기관별 소관업무를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기구조정
 - 명칭변경 : 규제개혁담당관 → 녹색정책담당관(안 제6조제1항)

4. 참고사항

- 경상북도 에너지정책과 - 241(2009. 5. 14)호

5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

-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괄·조정 및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기구조정과 기관별 소관업무를 규정하는 개정안임
- “규제개혁담당관”을 “녹색정책담당관”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고, 소관업무를 일부 조정 하였으며
- 부칙에 다른 조례에 명시된 부서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